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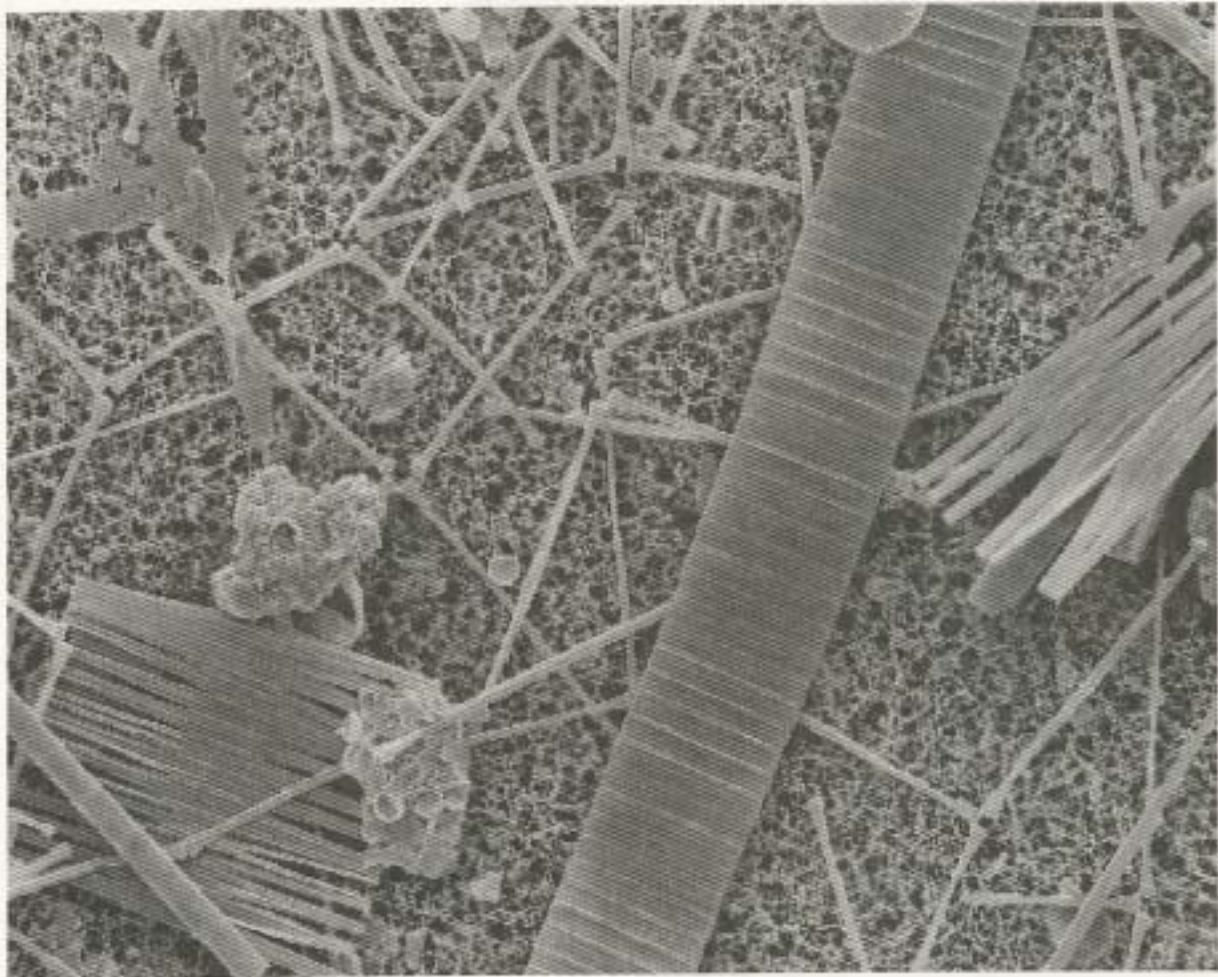
# 漢 水 물 安 全 성 확 보 를 위 한 조 류 예 보 제 실 시

국가차원에서 공식운영하는 곳 우리나라 유일

# 類

심수원의 오염은 비단 오염의 주체인 인간의 의해서만은 아니다.  
이상기후 등 새로운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특성을 머금은 생명체를 만들기도 한다.  
최근 심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쳐 문제가 된 녹조현상이 그 예이다.

Ovalocella pinorum 원수 중에 대량으로 번식 해서 2~4mm 이소 블내모 뿐만 아니라 자오즈민 남해 유방



## 녹조발생

의 원인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발생된 조류는

즉시 제거할 목적으로 조류예보제가 실시중이다.

조류예보제는 조류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염록소( $\text{Chl-a}$ ) 농도와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발생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된다. 주의보 이상이 되면 취·장수장 등 관계기관은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정수처리 강화와 조류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88년 대청호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녹조현상이 최근에는 팔당, 대청 등 주요 경제성 수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조류가 다량 발생하면 정수처리 시 여과장치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 용수이용률의 장애와 호수내 산소고갈에 의한 어·폐류의 질식사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독소를 생성하는 남조류에 의한 건강상 피해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수처리과정에서 모두 제거되므로 그 피해사례는 없으나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한강수질검사소의 박혜경 박사는 "남조류 중 독성을 발생시키는 일부가 상수원에 대량 발생할 경우, 대부분 정수처리과정에서 해소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녹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조류예보제 실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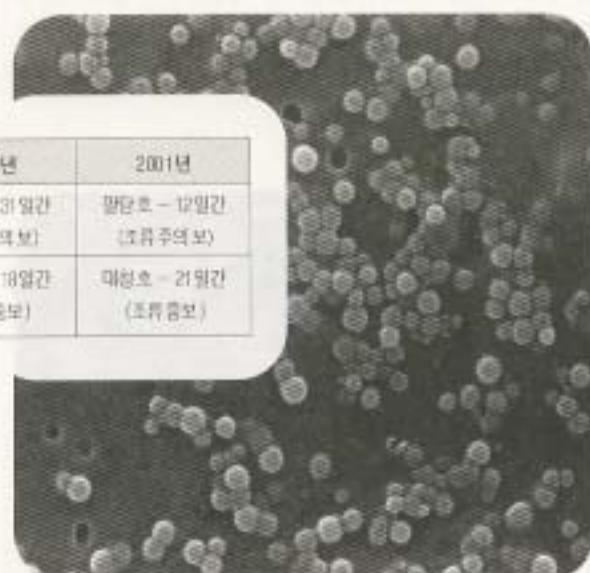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팔당호 - 130일간 (조류주의보)	대청호 - 31일간 (조류주의보)	업무	팔당호 - 31일간 (조류주의보)	팔당호 - 12일간 (조류주의보)
대청호 - 96일간 (조류주의보)			대청호 - 18일간 (조류경보)	대청호 - 21일간 (조류경보)

'96년도부터 대청호에 대해 처음 시행해 온 조류예보제는 '98년도에는 팔당·대청·충주·주암호등 4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99년도에는 동지역을 포함하여 금호강계통의 광역 상수원인 운문호를 포함 5개소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명령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 확대 계획이 있다. 이러한 조류예보제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운

영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며 단지 호주의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류주의보·경보 등을 발령하는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 현재 운영중인 조류예보 발령기준 및 대응조치 요령은 수년간에 걸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좌측 표를 보면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에 대해 한강수질검사소의 박혜경 박사는 "녹조현상은 강우계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당시 더운날씨에 많은 비가 내려 상수원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비가 멎고 가뭄이 시작되어 물이 정체됨에 따라 녹조가 활발히 일어난 것

### 조류예보제 발령기준

구 분	발령 기준
조류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회 연속해서 <math>\text{Chl-a}</math> 농도 15~25mg/l</li><li>· 남조류 세포수 500~5,000 세포/ml</li><li>· 미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시</li></ul>
조류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회 연속해서 <math>\text{Chl-a}</math> 농도 25mg/l 이상</li><li>· 남조류 세포수 5,000 세포/ml 이상</li><li>· 미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시</li></ul>
조류대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회 연속해서 <math>\text{Chl-a}</math> 농도 100mg/l 이상</li><li>· 남조류 세포수 106 세포/ml 이상이고 스콜(Score) 발생시</li><li>· 미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시</li></ul>
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회 연속해서 <math>\text{Chl-a}</math> 농도 15mg/l 미하</li><li>· 남조류 세포수 500 세포/ml 미하인 경우</li><li>· 미상의 조건을 하나에 해당시</li></ul>



*Applanocapsa delicatissima*: 원수 중에 대량으로 번식, 세포 직경이 작아서  
여과수에 누출

## 조류에 보발령 단계별 관계기관 대응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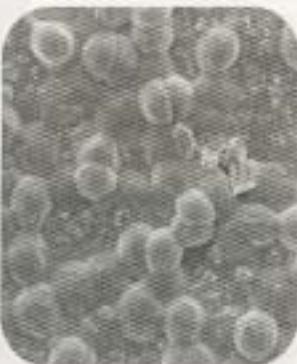
단계	관계기관	대응 내용
조류 주의보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소)	주 1회 이상 시료채취, 세포수 분석, 원수의 취기분석 (관능검사) 및 경성분석(필모사 마이크로시스탄 등 독소분석방법)
	수면관리자	취수구 및 조류 우심지역에 팬스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
	취·정수장	수온상승 증가 및 활성탄처리 강화 등 조치, 원수에서 마이크로시스탄 등 독소를 출시하는 경우의 독소분석
	(자발) 환경관리원 및 지자체	주변오염원에 대한 저속력 단속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철저(고도처리 시설 도입 검토추진 등)
조류 경보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소)	주 2회 이상 시료채취, 세포수 분석, 원수의 취기(관능검사) 및 독소 청정분석(마이크로시스탄 등 독소분석 방행)
	수면관리자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에 팬스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
	취·정수장	조류증식 수심이 높아 취수구 이동, 경수의 취기 및 독소 분석, 원수에서 독성을 출시 활성탄 처리 강화 등 조치 ※ 간이정수장은 급수증단, 대체수원 확보
	(자발) 환경관리원 및 지자체	매스컴 발표, 주변오염원에 대한 저속력 단속강화, 수상스카, 수영, 낚시, 취사 등의 원수 활용금지, 어획류 머리 및 식용금지, 가축방역금지
조류 대발령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소)	저속력인 수질검사 및 분석실사, 원수의 취기(관능검사) 및 마이크로시스탄 등 독소분석
	수면관리자	차량음악제 살포, 조류제거선 및 마이크로스트레이너를 이용한 스心底제거, 원로통 살포 등 조류제거 조치
	취·정수장	조류증식 수심이 높아 취수구 이동, 활성탄 처리 의무화, 최종처리수(경수)의 microcyanin을 독성을 줄이 1ppb 미만일 경우 급수를 중단하고 독성제거 조치 강화 등 특별급수대책 강구
	(자발) 환경관리원 및 지자체	매스컴 발표 주변 오염원 저속력 단속강화, 양식금지

※ 대형내유로 물가위에도 해당기관으로 낮게 평가 가능한 표본적인 내용이 있을 시 특별경보는 판별표정

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해당지역에 일정 주기 검사 결과 2회 이상 녹조가 발생하면 검사소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녹조주의보·경보가 발생된 기관에서는 즉시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Anabaena variabilis : 원수내 대량으로 번식하여 청록색이 수면을 형성하고 어과수로 누출



Microcystis punctata : 다른 조류에 섞여서 출현하며 관속 어과지의 어과 막으로 누출

## 추진체계

